

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4-2호

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4년 1월 4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공고사유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: 2024.01.04. ~ 2024.01.17.(14일)
3. 공시송달 대상

| 구분 | 대상자 | 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 | 과태료 고지번호 | 과태료 | 체납자 주소 |
|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유한회사 지니 | 161414-0000570 | 0178200274100003300 | ₩11,161,800 | 충남 서산시 해미면 대곡 2길 107, 303 호 |
| 2 | 송장섭 | 1973.00.25. | 0178200274100005894 | ₩31,860,000 | 전남 목포시 영산로 |
| 3 | 강덕호 | 1967.00.03. | 0178200274100004074 | ₩31,860,000 |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정로 |
| 4 | 윤여봉 | 1969.00.01. | 0178200274100005917 | ₩22,302,000 |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576 번길 |
| 5 | 이상희 | 1988.00.29. | 0178200274100004086 | ₩31,860,000 |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 6길 |
| 6 | 한정수 | 1982.00.05. | 0178200274100005920 | ₩31,860,000 |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성진로 |
| 7 | 김현태 | 1975.00.16. | 0178200274100004080 | ₩31,860,000 |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 11길 |
| 8 | 정성식 | 1972.00.20. | 0178200274100004088 | ₩29,736,000 |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명동길 |
| 9 | 송호성 | 1958.00.13. | 0178200274100004087 | ₩31,860,000 |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35길 |
| 10 | 최희영 | 1986.00.06. | 0178200274100004280 | ₩2,640,000 | 경기도 이천시 향교로 69번길 |
| 11 | 이종원 | 1976.00.06. | 0178220274000001363 | ₩4,339,200 |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백옥대로 2332번길 |
| 12 | 박수영 | 1969.00.03. | 0178230274100002129 | ₩2,995,000 |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|
| 13 | 이정훈 | 1973.00.17. | 0178200274100008871 0178200274100008825 0178200274100003296 | ₩4,395,000 ₩2,752,000 ₩135,000 |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7길 |

4. 문의: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(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, 6층 ☎ 042-347-2103, 2106)
5. 공고내용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납부방법: 인터넷지로(giro.or.kr) 또는 NTR POPCON(ntrpopcon.go.kr), 모바일앱(NTR POPCON)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(수납기관 :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)
7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 - 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 - 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 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 - 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